##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

제정 2017. 3. 10 훈령 제410호 일부개정 2017. 10. 2 규칙 제8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 일부개정 2019. 5. 27 훈령 제447호 전부개정 2024. 9. 27 훈령 제542호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2. "상황관리"란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(이하 "상황실"이라 한다)에서 각 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3. "재난안전정보시스템"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, 예보, 경보, 전파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일체를 말한다.

#### 제2장 구성 및 임무

제3조(구성) ① 상황실은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장(이하 "상황실장"이라 한다)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시민안전관이 된다. 다만, 휴일

####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

- 및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부시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.

제4조(임무)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
- 2.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
- 3. 행정안전부, 경기도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
- 4.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
- 5.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, 유관기관 · 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
- 6.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·장비의 관리 총괄
-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, 전파 및 보고
- 2.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, 점검 및 유지보수
- 3.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
- 4.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
- 5.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
- 6.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
- 7.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
- 8.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, 사고 수습 부서 · 기관과 긴밀한 협조
- 9.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

#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

제5조(상황실 운영)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.

-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.
- ③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,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

- 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인원 등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1.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
- 2. 명절, 연말연시,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- 3. 상황근무자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 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4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
- 4.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6조(근무시간 및 복무)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:00부터 18:00까지, 야간근무는 18:00부터 익일 09:00까지로 한다. 다만, 상황실장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  - ③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,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.
  -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

- 제7조(상황보고 및 전파)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,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,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·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상황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)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정기보고서: 매일 1회 작성하는 "재난안전 일일 상황"보고
  - 2. 수시보고서: 필요 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
  -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,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 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 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  -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을 활용하되,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(PS-LTE), 서면, 구두, 전화, 모사전송(FAX)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보고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협조체계)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,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상황실장은 경기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,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

- 제10조(기록관리)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하고,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·전파체계도,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,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·관리하여야
  -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장비관리)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, 이를 위해 상황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관리카드

- 및 관련 대장을 비치 ·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・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6장 보안관리

- 제12조(문서 및 장비보안)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·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·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.
- 제13조(보안관리)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,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상황실 출입제한)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 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##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

- 제15조(결원보충) 시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현업공무원 지정 등) ① 시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「지방 공무원 복무규정」 제5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의 요건을 고 려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실근무자에게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

- ③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, 승진 가점 부여, 해외연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
- 제17조(교육·훈련)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 요한 자체 교육·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18조(근무환경 조성)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·통신 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〈2024. 9. 27 훈령 제542호 전부개정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]

## 상황근무자 근무수칙(제6조제4항 관련)

- 상황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-
- 1.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.
- 2. 준수사항
  - o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, 상황 인수·인계
    - 상황근무자는 3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,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
    -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
- 3. 보고서 작성기준
  - ㅇ 정기: 재난안전 일일상황 보고서 작성
  - ㅇ 수시: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(최초-중간-최종)
- 4. 상황보고 및 전파
  - ㅇ 시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
  -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, 상황전파시스템, 유선 또 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ㆍ전파
  - ㅇ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
- 5.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·확인하고,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·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.
- 6. 중앙행정기관, 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,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7.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.
- 8.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- 9.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. 다만,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다.
- 10.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용인시

# 재난관리 일일 상황

부 서 장 OOO 부서팀장OOO 주 무 관 OOO

ㅇㅇㅇㅇ.ㅇㅇ.(ㅇ) 07시

**324**-0000

# 기상상황

오늘, 내일 기온(최저/최고 °C): O/O, O/O

# [특보] (없음)

- 오늘(○○/○):
- 내일(○○/○):

#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

- O 주요 재난(안전)
- **▶** (○○)
  - 1
  - 2

# ○○○○년 재난발생 현황

	분	소계	자연재난				사회재난						
구			호우/ 태풍	대설	지진	기타	화재	산불	폭발	교통 사고	붕괴	환경 오염	기타
누	계												
금	回												

※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[별지 제2호서식]

용인시

재 난 명 - 00구 00동 -

0000. 00. 00.(요일) 부 서 장 000(☎0000) 부 서 팀 장 000(☎0000) 주 무 관 000(☎0000)

# 사고개요

- ▶ 일 시:
- 위 치:
- ▶ 내 용:
- ▶ 사고원인 :

# 피해사항

- ▶ 인명피해 :
- ▶ 재산피해 :

# 조치사항

# 위치도 및 현장사진

- O 위치도
- O 현장사진
- ※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[별지 제3호서식]

# 재난상황 보고서

0000.00.00.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장: ○○○☎000-000-0000 상황근무자: ○○○☎0000

제목 : (예시) ○○동 ○○공장 화재발생 상황보고

1. 일시: 0000. 00. 00. 00:00 <i>(재난 발생일시)</i> 2. 장소: ○○시 ○○로 ○○번길 ○○공장 <i>(구체적인 장소)</i> 3. 상황 개요	
(예시) 금일 9:50경 ○○동 ○○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4. 피해상황	
가. 인명피해: 명(사망:,실종:,부상:) ※ 별첨:사망자·실종자 인적 사나. 재산피해:	·항
다. 그 밖의 피해 5. 응급조치 사항 가. 조치사항	
- - - 재난문자 발송 : 0000. 00. 00. 00:00	
나. 동원사항 - 인력: 명(민간인: , 군인: , 경찰관: , 소방공무원: , 공무원: - 장비: 대( )	)
6. 지원 및 협조사항 -	
- 7. 향후 전망 및 대책 -	

작 성 방 법

- 1. 사망자ㆍ실종자 인적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.
- 2.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음.

#### [별지 제4호서식]

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(00.00.주/야간)													
													결
													재
근무?	기간		년	월	일		~		Ó	]		·	
상 황	반원	소속 즈		ス	급			성명					
근무자	반원	소속		ろ	]급			성명		명			
	1차	점검대상			점검(보고)시간			이상유무					
	1/1	경기도청			(	00:00							
점검/		용인소방서			00:00								
보고	2차	용인서부소방서			00:00								
	245	용인동부경찰서			00:00								
		용인서부경찰서			00:00								
			자연	재난		사회재난							
재난발생건수 (총 0건)		소계	호우/ 대설	태풍/ 폭우		소계	화재	산불	폭발	교통 사고	붕괴	환경 오염	기타
	/신)												
사건/사고 현 황		0											
훈련상황		$\bigcirc$											
기상정보 현 황		0											

# [별지 제5호서식]

#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관리카드 (시설명 000)

①관리번호					⑩현 황 사 진						
②시설구분											
③지 구 명											
④위 치	주 소										
±2+1 ^1	상세위치										
⑤하천명 및 유역연장											
	착 공 일		준 공 일								
⑥시공상황	업체 명				①위 치 도(1/50,000)						
⑦예·경보	사 업 비				<b>3</b> 11 1 <b>2</b> (1/00,000)						
⊕예·경모 발령기준											
⑧통신방식											
	구 분	소 속	직위(직책)	전화번호							
9관 리	담 당 관										
책임자	팀 장										
	실 무 관										

水 체 점 召 및 유 지 보 수 계 약 관 리	⑩점검기간	점 검 내 역		(5)유지보수 용역비	(16점검자 및 수리업체	①관리상태		(B)설치위치 적정여부		19확	인
		① 점검내역	<b>④</b> 수리내역	0 7 4	1 21 13 711	양호	미흡	적정	부적정	일자	확인자